#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내용

운영지침에 대한 출연(연)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지침 개정 사실에 대해서도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 --- | --- |
| <신 설> |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br><br>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br>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br>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br>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br>5. 연구 실적 및 경 |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1. ~ 6. (개정안과 같음) |

| | | |
|---|---|---|
| | 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2032 |
|---|---|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이상휘·김성원·최수진 서일준·김태호·박충권 박성훈·신성범·윤영석 김장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2024년 1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체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5년 3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동 훈령에서는 연구기관의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동 훈령은 현행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 지원, 국가 연구개발 정책 수행, 인사 및 재정관리 등 공익성과 규범성이 매우 높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훈령에서 연구기관의 운영방식을 규율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적 위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동 훈령에 대한 법체계적 정당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신 설> | 제10조의2(운영지침의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고, 이를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br>1. 조직 운영과 정원·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br>2. 예산의 편성·집행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br>3.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br>4. 경영혁신 방안에 관한 사항<br>5.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br>6. 그 밖에 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